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42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내국법인의 소재 · 부품 · 장비전문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및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김영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3

I. 개요

1.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42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25.

(3) 회 부 일 : 2025. 2.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 하거나 내국법인이 관련 분야의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인수가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기업의 요구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을 강화시키고 국내의 기술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해외기업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김영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현행	개정안
○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3제1항) ○ 대상: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투자 ○ 특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7. 12. 31.</u>(김영진의원안)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제13조의3제3항) ○ 대상: 내국법인이 국내산업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인수 ○ 특례: 인수가액의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7. 12. 31.</u>(김영진의원안)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시행일: 2026. 1. 1.(김영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김영진의원안 2025. 2. 25. 발의(의안번호 8422), 추경호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52),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

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김영진의원안은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와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추경호의원안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정부안은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에 한하여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소재·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의미하고, 장비란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를 의미함.

소재·부품·장비의 범위는 면직물·모직물 등 섬유, 각종 화학물질, 반도체 소재 및 제조용 기계 등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 있음.

□ 현행법 제13조의3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인수가액의 일정 비율 만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이하 “투자대상기업¹⁾”)의 소재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 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인력개발·시설투자를 통하여 투자
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를
각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제13조의3제1항),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²⁾

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
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전문기업”이란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14조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
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
다.

1.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
발비 지출 비중
2.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또는 전
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
3.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

제14조(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①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에 속하는 기업

제15조(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장성과 유
망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
업 및 창업기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등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3.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4. 기술·인력·금융·경영·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7.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등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함(제13조의3제3항).

본 특례제도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2019년 8월 5일에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음.

당초 소재·부품·장비 관련 투자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2022년 세법개정 당시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등 취득·인수를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음.

□ 개정안은 수요기업의 요구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안정적인 기술개발을 유인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해외 유망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인수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기술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신속한 기술확보를 지원하며,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서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⑦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대상외국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해당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이 경우 주식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매출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
2.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3.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매출액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소재·부품·장비의 핵심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을 확보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제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본 제도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만성적인 해외 의존구조와 낮은 자체 조달률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그 결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을 비롯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국가별 소재·부품·장비 수입의존도 추이]

(단위: %)

구 분	2018년	2022년
중국	28.3	29.9
일본	18.3	15.0
미국	11.8	10.0
대만	6.8	9.5
독일	5.0	4.1

자료: 관계부처 합동,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2023. 4.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관세전쟁 격화 등에 따라 반도체의 생산·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소재·부품·장비 업계 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³⁾.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소재·부품·장비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재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4년 12월 본회의 의결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였던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이하 “소부장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

소부장특별회계는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왔으며('20년 결산 기준 2조 757억원, '25년 예산 기준 2조 2,843억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총 11조 5,391억원을 조성하여 소재부품 장비경쟁력강화,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8조 5,733억원, 74.3%), 기반구축(2조 437억원, 17.7%), 자금지원 및 생태계구축(9,221억원, 8.0%)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공급하였음.

참고로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약 5.4% 증가한 2조 2,843억원의

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부 장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반도체 업계 간담회 개최”, 2025. 4.

예산이 편성되었음⁴⁾.

[소부장특별회계 운영 현황(분야별)]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합계	20,744	25,541	23,963	23,462	21,681	115,391
기술개발	13,308	17,349	18,435	18,657	17,984	85,733
기반구축	4,021	4,328	4,058	4,443	3,587	20,437
자금지원	3,400	3,800	1,400	300	40	8,940
생태계구축	15	64	70	62	70	281

자료: 기획재정부

둘째, 조세지출 실적을 감안하여 본 조세특례의 존속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본 조세특례의 경우 2020년 제도 신설 이후 2021년 145억원, 2022년 174억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하였으나 2023년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이후 조세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음.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신설	145	174	0	0	0	0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기획재정부는 현행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조세지출 실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기한을 종료할 필요가 있으나, 국내 기반이 미흡한 기술 취득을 위하여

4) 기술개발 1조 8,996억원, 기반구축 3,777억원, 자금지원 0원, 생태계구축 70억원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해외기업의 인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기업 인수 시 과세특례는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